

**2023학년도 제3차  
〈제363차 이사회 회의록〉**

**2023. 6. 8.**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23학년도 제3차

### <제36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23. 6. 8(목) 07:30 ~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5월 31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영래  
최기주, 김선용, 최성민 (12인)
- 감사 : 임종인, 윤경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교무처장 손정훈, 기획처장 강민철  
의료원장 박해심, 병원장 한상욱,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5인)
- 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박재호, 기획팀장 김종현, 신창규 (3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아주대학교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 -

2023. 6. 8. 월

이사 김선용

## 7. 심의내용

### 제 1 호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교원 정원 조정 및 증·충원 심사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교원의 경우 교육, 연구, 진료에서 M.D.Ph.D.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MD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며, Ph.D. 교수 충원의 경우 과별 TO개념을 떠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공통 TO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초교원 TO는 현 정원을 유지하되, 정년이나 중도퇴직으로 발생된 TO는 공통 TO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상교원의 경우 2022학년도 진료실적과 타 병원 대비 실적을 바탕으로 과별 우선순위 기준을 부여하고자 하며, 의료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원하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교원 TO와 특임교원 TO간의 혼용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강력히 제한할 계획이며, 각 교실(과)의 미충원 TO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 공통 TO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정원은 교원 329명, 특임교원 141명, 강사 6명, 연구·임상강사 13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2024학년도 전체 충원계획 규모는 정년퇴직 대체 TO 교원 13명과 2023학년도 미충원 및 중도퇴직 대체 TO 교원 20명 및 특임교원 33명 등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초빙계획 인원은 최대 66명이지만,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T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 성 :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2 호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

이 사 장 :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심의(안) 발의.

교무처장 손정훈 : 먼저, 본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전임교원 7명, 특별임용교원 1명으로 총 8명입니다.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트랙 12명과 비정년트랙 3명 등 총 15명에 대한 교수초빙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년트랙 9개 분야에 대해 2배수 후보자가 선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추천되었으며, 이 중 전자공학과와 심리학과 후보자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후보자를 최종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정년트랙은 적임자가 없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연구실적과 이력 내용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대우교수 신규임용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 -

이기우

이사

김선용

학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올해 8월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약학대학은 이 분을 대우교수로 초빙하여 통합 6년제 학제 변경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분의 경험과 활동 경력이 학과 및 학교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의료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전임교원 6명입니다. 총 10명 초빙을 계획하였으나, 채용 진행 과정 중 본인이 지원을 철회한 지원자를 제외하고 최종 6명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연구실적과 이력 내용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교무처장 손정훈** :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본교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4명과 비정년트랙 2명으로 총 6명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중점 조교수 1명, 연구중점 조교수 1명은 각각 수업시수 미충족, 연구업적 미충족의 사유로 재임용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으며, 다산학부대학 교육중점 조교수 1명은 일단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으나 2023년 1학기 수업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 의료원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3명, 조교수 1명으로 모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문길주** : 우수한 후보자 분들을 모셔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스카우팅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성** : 의료원의 경우 3년에서 5년 후 필요한 인재를 사전에 물색하고 접촉하면서 우리대학으로 모셔올 수 있는 선제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초빙 방안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내용

### 가. 신규임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기계공학과	이승훈	조교수
	기계공학과	이현범	조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윤태광	조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장원준	조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송수환	조교수
	수학과	이정인	조교수
	경제학과	신선호	조교수
	약학과	이봉진	대우교수
의료원	의학과(예방의학교실)	임형렬	조교수
			2023.9.1. ~ 2027.8.31.(4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기근 이사 김선용  
- 3 -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학과(알레르기내과학교실)	이영수	조교수	2023.9.1. ~ 2027.8.31.(4년)
의학과(외과학교실(외상))	최동환	조교수	2023.9.1. ~ 2027.8.31.(4년)
의학과(정형외과학교실)	조원태	조교수	2023.9.1. ~ 2027.8.31.(4년)
의학과(비뇨의학교실)	조대성	부교수	2023.9.1. ~ 2029.8.31.(6년)
간호학과	이지예	조교수	2023.9.1. ~ 2027.8.31.(4년)

- 이상 본교 8명, 의료원 6명 -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기계공학과	이정일	부교수
	소프트웨어학과	이슬	부교수
	국방디지털융합학과	박종호	조교수
	물리학과	이형우	조교수
	디지털미디어학과	정태영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다산학부대학	박창환	(교육중점) 조교수
의료원	의학과(산부인과학교실)	백지희	부교수
	의학과(영상의학교실)	김진우	부교수
	간호학과	유미애	부교수
	의학과(응급의학교실)	김혁훈	조교수

- 이상 본교 6명, 의료원 4명 -

#### 제 3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먼저, 총장직속기구인 혁신공유단과 하부조직인 혁신공유팀의 명칭을 교육부 사업명 변경에 따라 혁신융합단과 혁신융합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신관 신축 등 기숙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속기관인 생활관 산하에 업무지원부서인 운영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폐지안입니다. 기술사업화 조직을 기술사업화팀에서 산학협력단장 직속의 기술사업화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BO(Chief Business Officer)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대형 국책과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 관련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영 래 :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4 -

이사 김선용  
2023.9.1.2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내지 ⑦ (생략)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공유단, SW융합교육원,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⑨ 내지 ⑩ (생략)</p>	<p>제5조(기구)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융합단, SW융합교육원,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부속기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2. &lt;삭제 2017.2.9&gt;          3. 글로벌미래교육원 : 교학팀          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          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운영팀          6. &lt;삭제 2016.8.26.&gt;          7.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 운영팀          8. 아주지속가능발전센터 : 운영팀          9. 국제교육센터 : 운영팀  <b>&lt;신설&gt;</b></p>	<p>제10조(부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호 내지 9호 (현행과 같음)</p> <p><b>10. 생활관 : 운영팀</b></p>
<p>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내지 ② (생략)          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산학감사팀, 산학사업팀 및 기술사업화팀을 둔다.          ④ 내지 ⑥(생략)</p>	<p>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산학감사팀 및 <u>산학사업팀</u>을 둔다.          ④ 내지 ⑥(현행과 같음)</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⑦ (생략)          ⑧ 혁신공유단은 신기술 인재양성 및 교육혁신 공유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혁신공유 팀을 둔다.          ⑨ 내지 ⑯ (생략)          ⑯ 혁신공유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⑰ 내지 ㉕ (생략)</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혁신융합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 및 교육혁신공유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혁신융합팀을 둔다.          ⑨ 내지 ⑯ (현행과 같음)          ⑯ 혁신융합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이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⑰ 내지 ㉕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5 -

2017/7/7 이사 김선용

현 행	개 정
<p>㉖ 혁신공유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㉗ 내지 ㉙ (생략)</p>	<p>㉖ 혁신융합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㉗ 내지 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소속 교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생활관' 소속 교직원은 '생활관운영팀' 소속으로 본다.</p> <p>②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부서(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p>

#### 제 4 호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제정(안) 발의.

교무처장 손정훈 : 아주대학교 전임교원의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돋고 창업기업의 관리와 교원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창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창업은 최초 2년을 승인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 시 재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창업 승인기간은 교원 겸직 허가 기간에 맞춰 학기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학과 학사일정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대학재정 기여 정책과 관련 교원창업 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7% 이상을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편입 시 재정적 기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원 창업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 학생이 창업기업에 종사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수간의 이해충돌 문제나 창업으로 인한 교원의 업무공백에 대한 소속학과 교원과의 이해충돌 문제, 대학소유 특허에 기반한 개량기술 권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 등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조치사항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최기숙

- 6 -

이사 김선통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성** : 교원이 창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 교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학교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면서 지원책이 없다면 자칫 창업을 제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률 등의 경영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무처장 손정훈** :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과정부터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설립 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문길주** : 겸직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큰 재정 지원책입니다.

**이사신상협** : 교원은 교육과 연구 업무 이외에 영리 추구를 위한 활동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정 기간 허용해 주는 것은 대학 핵심자원으로서의 교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교원은 소속 대학에 일정 부문의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사김성진** : 제정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최성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창업규정 제정 전문

### 제정 전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2.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겸직”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교원이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2조의2에 규정된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7 -

31713

이사 김선용

## 제정 전문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교원창업의 기본 원칙)** ① 교원창업에 따른 활동은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창업 대상 기술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한 한다.

**제4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창업지원단으로 하며, 창업에 따른 기술실시 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겸직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 제 2 장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제5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창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신청에 대한 사업성 및 적합성
2. 교원창업 허가의 적정성
3. 의무 위반 창업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4. 기타 교원창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신청자격)** 창업신청자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으로서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제7조(교원창업의 신청 및 승인)**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 학기 시작 최소 3개월 전까지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를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주)의 자회사로 설립·편입하는 경우,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류는 자회사 설립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8조(창업기간)** ① 창업자의 창업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학교재정기여 계획

<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217127

- 8 -

이사

김선용

## 제정 전문

을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주)의 자회사로 설립·편입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주)의 해당 창업기업 지분 매각 시까지 창업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3 장 교원창업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제9조(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등의 경영지원
  2. 창업보육센터 공간 우선 배정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재정적 기여 및 의무사항)** ① 창업자는 최초 창업 겸직 신청 시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 수의 7% 이상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 무상 증여하여야 한다.

② 다만, 창업기업 설립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최초 1억원이 될 때까지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보유 지분이 7%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증자 즉시 해당 주식을 추가로 무상 증여하여야 하며, 1억원 초과 이후의 증자 시에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분을 유지 출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주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 또는 아주대기술지주(주)와 자회사 설립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정적 기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에 따른다.

④ 창업자가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본 대학교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창업과 관련된 변동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 사업 내용 변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이 창업 대상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대상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창업 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기준

이사

김선용

## 제정 전문

3.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창업자가 본 대학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창업 겸직 교원의 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 등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총장이 제1항 중의 사유로 창업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대상 기술의 허여 결정, 겸직에 대한 승인도 동시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① 창업 겸직 승인 기간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타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창업기업이 합병, 매각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 관계의 해소에서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제 4 장 보 칙

**제14조(폐업)** 창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기 1개월 이전에 폐업신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① 교원창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 대학교 제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겸직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재정적 기여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다만, 이 시행일 이후 이 규정에 따라 겸직을 연장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호 AU50첨단융복합관 신축 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AU50첨단융복합관 신축 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AU50첨단융복합관 신축 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낮고 노후화된 캠퍼스 서편 건물들을 대체하여 교육 및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2022년 신설된 첨단학과의 집적화 및 편제 완성에 대비한 공간 및 융복합 교육·연구 공간의 신규 확보를 목적으로 AU50첨단융복합관 건립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6,763평의 규모로 학군단 연병장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간 구성(안)은 교내

<간서명란>

이사장 

이 사   
- 10 -

이 사 김선용

협의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31억원이며, 건축 및 발전기금 81억 원과 특수대학원 등 교내기금 100억원 이상, 기채 150억원, 기부금 모금 등으로 200억원을 조달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신상협 : 이 건물이 완공되면 부족한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기획처장 강민철 : 네, 일단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서관 및 동관 등 노후 건물들을 멀실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으며, 첨단융복합관이 완공되면 당분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신상협 : 노후 건물들을 대체하고 나면 일부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향후 통상 늘어나는 공간수요 수준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이사(총장) 최기주 : 교수 룸이 6평 정도이고 작은 랩실의 경우 이보다 작기 때문에 상당 기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신상협 : 공간 보유현황, 사용계획 및 멀실예정 등 전체적인 공간계획에 대해 짚어주시면서 향후 몇 년 정도 공간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사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건물 신축의 필요성 등 사안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총장) 최기주 : 원천관 건물이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 멀실을 고려하고 있는 동관 및 서관 등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첨단융복합관 건립을 시작으로 하는 캠퍼스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신상협 : 기타 기부금 모금 등으로 200억원을 조달한다고 하셨는데 연간 기부금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재원 조달방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총장) 최기주 : 소요 재원과 관련 부연 설명드리면, 건축비 등 소요예산이 약 531억원으로 일산관 및 혜강관 건립비용보다 규모가 크고 기존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재원 조달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특수대학원 등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학내 사정을 고려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화하여 다음 이사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그러면 차기 이사회 때 학교 차입금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김성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AU50첨단융복합관 신축 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2177 이사 김선용  
- 11 -

## ■ AU첨단융복합관 신축 승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 면적	3,762.55m <sup>2</sup>	※ 건축 (연)면적, 소요예산 등은 설계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축 연면적	22,357.95m <sup>2</sup>	
규 모	지하 2층, 지상 10층	
소요 예산	53,100백만원	

## 제 6 호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추진 승인(안)

**이 사 장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추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캠퍼스마스터플랜 1단계 계획에 따라 기존 4인실 중심의 노후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2인실로 대체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신입생 수용률을 높이고자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며, 2인실 495실 기준 9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현 구매창고 부지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960m<sup>2</sup>이며, 연면적은 20,917m<sup>2</sup>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7.2억원이며, 이 중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공사비의 90%를 부담하며 학교 부담분은 10%인 약 48.7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여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행복기숙사가 신축되고 남제관이 멀실된다는 가정 하에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30.42%에서 33.1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2 기준 중앙일보 평가 수용률 순위를 보면 7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사업의 운영방식은 BTO 방식을 준용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SPC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각각 50%를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하며, SPC는 기숙사 완공 후 건물을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최대 30년간 기숙사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며, 차입금은 30년간의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복기숙사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입주보장률을 7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입주보장률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 지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복기숙사의 평균 기숙사비가 교내 신축기숙사의 기숙사비보다 저렴하며, 교내기숙사 입사경쟁률과 남제관이 멀실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입주보장률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SPC의 교지사용에 대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SPC에서 부담하며 지방세 중 재산세는 학교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박상일 :** 학교 부담금 10%는 건축비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차입금은 어디로 집행이 되나요?

**기획처장 강민철 :** 건축자금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SPC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2 -

3/17/22

이사 김선용

**이사 박상일 :** 학교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을 건설회사에 주는지 SPC에 주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금집행 및 자금부담 등 전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신희택 :** SPC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률적인 구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누구이며, 세금 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설계 당시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실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향후 30년간 이자율을 고려한 원리금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기존 기숙사 공간의 공실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운영 수입은 비슷할 수 있지만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획처장 강민철 :** 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협의를 거쳐 복지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의 입주 경쟁률은 당연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성적우수자 등 일정 요건을 부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학교 기숙사별 노후도에 따라 기숙사가 차등 책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수요에 따라 모두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신상협 :** 네,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박상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희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추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추진 승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건물 신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규모 : 지상 12층, 지하 1층</li><li>▶ 위치 : 현 구매창고 부지</li><li>▶ 건축면적 : 1,960m<sup>2</sup></li><li>▶ 연면적 : 20,917m<sup>2</sup></li><li>▶ 소요예산 : 487.2억원</li></ul>	※ 신축 개요, 소요예산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우학원이 각각 50% 출자 (최소 500만원 이상)</li></ul>	
교육부 허가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수목적법인(SPC)의 교지사용에 대한 교육부 허가 절차 진행 예정</li></ul>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2017/2  
- 13 -

이사 김선흥

## 제 7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입니다.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교원 임명 동의 대상자는 2명인데, 우선 총장께서 약학대학장 후보자인 이봉진 대우교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주 총장이 약학대학장 후보자의 경력 및 제청 사유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다른 한 분은 차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입니다. 현 의료원장의 정년이 2023년 8월 말 예정으로 그 후임으로 한상욱 병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참석 임원 후보자 이력서 등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 기	비 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학과	교 수	한상욱	2023.9.1.~2025.8.31	신 임
약학대학장	약학과	대우교수	이봉진	2023.9.1.~2025.8.31	신 임

### 8.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63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김선용 이사, 최기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최기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최기주 이사 김선용  
- 14 -

## 9.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63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23년 6월 8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김성진	김성진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김성	김성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김영래	김영래
이사	최기주	최기주
이사	김선용	김선용
이사	최성민	최성민
감사	임종인	임종인
감사	윤경식	윤경식